

학교기업 운영 규정

제정 2013. 3. 1. 개정 2013. 7. 1.
개정 2014. 3. 1. 개정 2016. 10. 5.
 개정 2016. 12. 23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교의 학칙에 따라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은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구성원에 대해 적용한다.

제3조(학교기업의 설치) 본교에 설치하는 학교기업의 명칭, 사업종목 및 연계 학부(과)는 학교기업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지원조직) 학교기업의 행·재정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.

제5조(교직원) ① 학교기업별로 소장을 둘 수 있다.

② 학교기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, 조교,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③ 총장은 대학의 교직원 또는 학교기업에서 임용하는 직원(조교, 연구원 포함)으로 하여금 학교기업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기업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.7.1., 2014.3.1., 2016.12.23.>

③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<개정 2016.12.23.>

제7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기업 운영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2. 학교기업 현장실습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
3. 학교기업의 회계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
4. 기타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8조(소집 및 의결)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6.12.23.>

제 4 장 현장실습

제9조(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) 학교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.

제10조(현장실습 활용) ① 본 대학 각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졸업학점의 4분의1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.

② <삭제 2016.10.5.>

③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은 3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 5 장 예산 및 회계

제11조(회계연도) 학교기업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.

제12조(예산) 학교기업의 예산편성·집행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의 학교 기업회계처리규칙의 범위 안에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7.1.>

제13조(회계) 학교기업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하며,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·연결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서는 관계법령에 따른다.

제1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학교기업의 운영성과 발생 시 순이익의 40% 범위 안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.

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%를 넘을 수 없으며 교직원의 연 보수 총액을 넘을 수 없다.

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혜택으로 지급하되, 1인당 연간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.

④ 제1항, 제2항,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6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